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7-10

수 원 지 방 법 원

제 2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 2018구합6568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
원 고 A 주식회사

[redacted]

[redacted]

피 고 [redacted]시장

변 론 종 결 2018. 10. 10.

판 결 선 고 2018. 10. 31.

주 문

1. 피고가 2018. 5. 9.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8,193,070원, 지방교육세 3,222,300원, 농어촌특별세 1,611,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7-10

이 유

1. 처분의 경위

가. 원고는 2012. 4. 27. 설립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철 구조물의 생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다.

나. 원고는 2015. 6. 24. 수원지방법원 [redacted]지원 B 강제경매절차[채무자 겸 소유자 주식회사 C(이하 'C'라고 한다), 이하 '이 사건 관련 경매절차'라고 한다]에서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 등(이하 통틀어 '이 사건 부동산'이라고 한다)에 관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(매각대금 9억 9,500만 원)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후, 2015. 7. 16. 위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, 2015. 8. 3.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'구 지방세특례제한법(2015. 12. 29.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같다) 제58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'에 해당한다는 이유로, 취득세 등 합계 47,262,500원 중 35,820,000원을 감면받았다.

다. 그 후 피고는 2018. 5. 9. 원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단서의 '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세가 감면된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'에 해당하는 감면받은 취득세액 등의 추징사유가 있다는 이유로,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38,193,070원, 지방교육세 3,222,300원, 농어촌특별세 1,611,150원을 각 부과 · 고지(이하 '이 사건 처분'이라고 한다)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호증, 을 제1, 2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7-10

2.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

가. 원고 주장의 요지

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,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불법점유자들이 계속 나타나는 바람에, 그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하여 법적인 대응을 하여왔고,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장업종변경 신고, 증축허가 신청을 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 왔으므로,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를 원고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,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.

나. 관련 법령

별지2 기재와 같다.

다. 판단

1) 관련 법리

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 의하면, "창업벤처중소기업 등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 다만,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."고 규정하고 있다.

위 규정에서 말하는 '정당한 사유'란 그 취득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 법령에 의한 금지 · 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는 물론 내부적으로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도 포함한다. 그리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7-10

할 때에는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,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·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,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. 다만,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,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였고, 취득 후 2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,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취득한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(대법원 2012. 12. 13. 선고 2011두1948 판결의 취지 등 참조).

2) 인정되는 사실관계

가) 원고는 2015. 7. 16. 이 사건 관련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, 이 사건 관련 경매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작성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현황조사보고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으로 D, E, F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.

나) 원고는 2015. 7. 22. 이 사건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인 C의 파산관재인 G 및 위 E, F, D을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[redacted]지원 H로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을 하였고, 2015. 8. 18. 다시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로 점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I(이하 'I'라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7-10

고 한다), J 주식회사(이하 'J'라고 한다)를 상대로 하여 위 법원 K로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을 하였으며, 2015. 8. 24.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위 각 신청을 모두 인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받았다.

다) 원고는 2015. 8. 17. C의 파산관재인 G, E, F, D, I 및 J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[redacted]지원 2015카단3275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, 2015. 8. 26.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위 신청을 인용하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다.

라)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[redacted]지원 H 부동산인도명령 결정 등에 터 잡아 2015. 9. 22.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도 강제집행을 실시하려고 하였으나, '토지 및 건물, 제시 외 건물을 채무자들(C의 파산관재인 G, E, F, D, I 및 J)이 경계 구분 없이 공동으로 점유·사용하고 있다'는 등의 사유로 인도 강제집행은 실시되지 못하였다.

마) 원고는 2015. 10. 8. 다시 C의 파산관재인 G, E, F, D, I, J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[redacted]지원 L로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을 하였고, 2015. 10. 14.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위 신청을 인용하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다.

바)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[redacted]지원 L 부동산인도명령 결정에 터 잡아 2015. 10. 20.경 위 법원의 집행관에게 2015본866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도 강제집행 신청을 하였으나, I 등이 이 사건 부동산에 있는 물품 등을 장애인단체에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장애인들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게 하고 있었고, 이에 따라 장애인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, 이 사건 부동산에 적치된 쓰레기 처리 등의 문제로 인도 강제집행은 실시되지 못하였다.

사) 원고는 위와 같이 각 부동산인도명령 결정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각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7-10

인도 강제집행이 불발되자, 2015. 12. 24.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로 점유하고 있던 I, E 및 J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46367호로 이 사건 부동산의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고, 2016. 9. 22.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위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,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.

아) 원고는 2016. 10. 7. I로부터 'I가 2015. 5. 1. 사단법인 M 영등포지부에 이 사건 부동산에 있는 물품 등을 양도하였다'는 취지의 통지서를 우송받았다.

자) 원고는 2016. 10. 14.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46367 판결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[redacted]지원 2016본845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있는 각종 물품에 대한 동산경매 신청을 하였고, 2017. 11. 1. 다시 종전의 부동산인도명령 결정에 터 잡아 수원지방법원 [redacted]지원 2017본821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도 강제집행 신청을 하였으며, 2017. 12. 29. 재차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46367 판결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[redacted]지원 2017본1022호로 동산강제집행 신청을 하였다.

차) 그 후 원고는 2018. 5. 9. E, I 및 J와 사이에, 원고가 8,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E, I 및 J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합의하였고, 이에 따라 원고는 2018. 6. 15.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.

카)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장 업종변경 신청을 하여, 2015. 12. 23. C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영위하던 '플라스틱 필름, 시트의 제조 · 판매업 등'의 업종을 '금속조립 구조재 제조업'으로 변경하는 승인을 받았고, 2015. 12. 29. [redacted]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공장 및 근린생활시설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한 도로 점용에 대한 권리 · 의무승계 허가를 받았으며, 2015. 12. 31.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7-10

산에서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에 대한 수리처분을 받았고, 2016. 1. 21.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공장시설을 증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앞서 든 증거, 갑 제3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, 변론 전체의 취지

3) 판단

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,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을 당시 현황조사보고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던 임차인들뿐만 아니라,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다른 업체 등을 상대로 부단히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을 하고, 이에 따른 부동산인도명령 결정에 터 잡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도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등의 진지한 노력을 계속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, ②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현황조사보고서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,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실제 점유자들이 따로 있었고, 그들이 장애인단체를 내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강제집행을 저지하는 등의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는 데 장애가 되는 사유가 있을 것까지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, ③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장 업종변경 신청을 하고, 도로점용 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조치를 계속 취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, ④ 피고가 2018. 6. 18. 원고에게, 이 사건 부동산의 위와 같은 인도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7-10

경위 등을 참작하여, 공장시설의 증축을 위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건축허가가 2016. 1. 21. 이루어졌음에도, 원고가 증축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, 완료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하는 건축허가의 취소를 2018. 12. 31.까지 유보하여 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,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,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홍승철

판사 인진섭

판사 권순현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7-10

별지1

부동산 목록

1. [redacted]도 [redacted]군 [redacted] 공장용지 8264㎡

2. [redacted]도 [redacted]군 [redacted]

위 지상

(가) 철골조 조립식지붕 단층 공장 1층 363.75㎡

(나) 철골조 조립식지붕 단층 공장 1층 496.08㎡

(다) 철골조 조립식지붕 단층 사무실 1층 82.82㎡

(라) 조립식조 조립식지붕 단층 관리사 1층 103.68㎡

(마) 조립식조 조립식지붕 단층 관리사 1층 100.8㎡

(바) 조립식조 조립식지붕 단층 기숙사 1층 75.8㎡

(사) 조립식조 조립식지붕 단층 물탱크실 1층 6.93㎡

제시외

㉠ (용도)창고(구조) 파이프조 (면적) 218.4㎡

㉡ (용도)창고(구조) 파이프조 (면적) 208.4㎡

㉢ (용도)창고(구조) 파이프조 (면적) 112.5㎡

㉣ (용도)창고(구조) 파이프조 (면적) 32.8㎡

㉤ (용도)창고(구조) 파이프조 (면적) 35㎡

㉥ (용도)창고(구조) 파이프조 (면적) 591.6㎡

3. [redacted]도 [redacted]군 [redacted] 도로 3945㎡

매각지분 공유자 주식회사[redacted]지분 3분의1전부.끝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7-10

별지2

관련 법령

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(2015. 12. 29.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
제58조의3(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)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(「지방세법」 제1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)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 다만,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·처분(임대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.

1.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(이하 이 조에서 "창업중소기업"이라 한다)

2. 2016년 12월 31일까지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(이하 이 조에서 "창업벤처중소기업"이라 한다) 끝.